「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1월 01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07일 회부

○ 상정일자 : 제25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11월 0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농축산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, 지위향상, 복지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 발전의 핵심인력양성 및 건강한 농촌 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 발전도모

나. 주요내용

○ 여성농업인 책무 및 지원범위(안 제3조 ~ 제4조)

○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(안 제5조, 제8조)

○ 여성농업인의 육성 위원회 설치 및 회의(안 제6조 ~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
○ 본 조례안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에 따라 평창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・지위향상・모성보호・보육여건 개선・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위한 지원근거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○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책무 및 지원범위를

안 제5조, 제8조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향상을

안 제6조, 제7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육성 위원회 설치 및 회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,

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